

5/13 5/28

판 결



서울고등법원

서 울 고 등 법 원

1995. 5. 4. 판결선고	인
1995. 5. 4. 원본영수	

제 2 특 별 부

판 결

사 건 94구39149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

원 고 이 기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찬진

피 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소송수행자 박찬술, 이영대, 주민균

변 론 종 결 1995.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4. 12. 8. 원고에게 한 1994년도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29. 9. 2. 생으로서 1991년부터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

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왔는데 1994. 12. 5. 피고에게 노령수당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 8. 보건사회부(현재의 보건복지부, 이하 같다)장관이 정한 '94 보건사회부 노인복지사업지침의 규정에 의하면 만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아직 만 70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령수당 지급대상자선정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잡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1994. 12.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1995. 3. 10. 그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시, 피고가 1994. 12. 8. 원고에게 노령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린 사실이 있지만 이는 현재로서 만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향후 국가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도 확대 지급되도록 보건사회부에 건의하겠다는 내용을 알리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

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
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
할 것이고, 나아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
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
리상의 권리가 있고, 행정청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의
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노인복지법 제18조에는 노령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구청장, 시장, 군수는 노령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노령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민에게는
노령수당 지급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그 신청을 받은 관할 행정청은 이에 대하여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노령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노령수당 지급신청을 거부한 사실
이 인정된다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인즉, 피고는 원고가 연령 때문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94 보건사회부 노인복지사업
지침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령수당 지급대

상자선정에서 제외하고 노령수당 지급신청을 거부한 사실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를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중 소득수준 등을 참작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위임된 범위는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것이고 연령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노인복지사업지침을 제정하면서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위임근거법령에 위배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무효인 위 노인복지사업지침에 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노인복지법 제1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노령수당을 지급할 시기 및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7조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 중 소득수준 등을 참작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노령수당의 지급수준은 노인복지 등을 참작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위임에 의하여 연령별 수발의 필요 정도, 신체기능상태, 일상생활동작능력, 일하는 노인의 현황 등과 국가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1991년에는 총 4,284,000,000원의 예산으로 70세 이상의 거액보호 가구주 51,000명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매월 10,000원씩의 노령수당을 지급하였고, 1992년에는 총 16,067,000,000원의 예산으로 70세 이상의 생활보호자대상자 191,000명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매월 10,000원씩의 노령수당을 지급하였으며, 1993년에는 총 22,826,000,000원의 예산으로 70세 이상의 생활보호자대상자 181,000명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매월 15,000원씩의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1994년에도 '94 노인복지사업지침을 마련하면서 전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같은 수의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같은 금액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생각건대, 노인복지법 제13조에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

도록 한 취지는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서 노후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관계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면,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국가의 예산사정상 당장에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므로 우선은 65세 이상의 자 중 매년 예산확보상황과 대상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급대상자의 연령과 범위 및 지급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볼이 상당하며, 특히 같은법시행령 제17조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 중 소득수준 등을 참작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자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도 원고가 주장하듯이 65세 이상의 자 중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하여금 단지 "소득수준"만을 참작하여 지급대상자를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위 시행령규정에서도 "소득수준 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소득수준 외의 사항도 참작하여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국가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자의 최저연령도 65세보다 높여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위 '94 노인복지사업지침이 같은법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위 사업지침에 따라서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5. 4.

재판장 판사 유지 담 _____

판사 이성보 _____

판사 지대운 _____

정 본 입니다

199 1995. 5. 11.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황성



...-2000